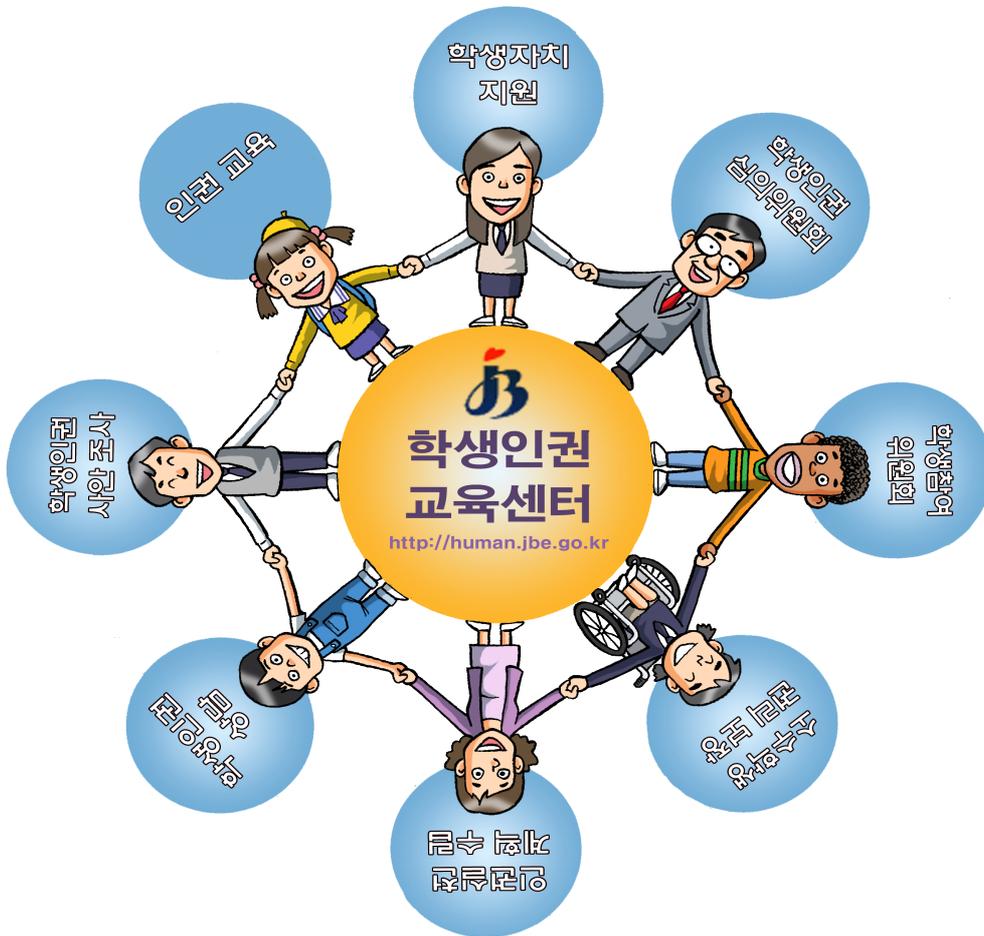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2015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교육센터]

□ 목 차

2015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추진 일정표 /1

2014 학생인권 관련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담당자 안내 /3

2015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방향 /4

실천과제 1 학생인권 보장 /5

실천과제 2 인권교육 /10

실천과제 3 학생자치 /12

실천과제 4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6

2015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추진 일정표

시기(월일)	업무/행사명	대 상	장 소
1월 22일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1차 워크숍	학생참여위원 50명	국립 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
3월 16일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및 연구동아리 공모	초·중·고 33팀	각급 학교
3월 24일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인권교육 강사단 40명	도교육청
3월 31일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워크숍	지도교사 30팀	도교육청
4월 2일	학생인권의 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각급 학교
4월 4일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명	도교육청
4월 7일	인권교육 연구회 워크숍	연구회 소속 교사 3팀	도교육청
4월 28일	학생회실 설치 지원학교 워크숍	중, 고 40개교	대상학교
4~11월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인권교육센터
4~11월	초·중학생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초·중학교 학생회 임원	지역교육지원청
6월	인권 관련 단체 워크숍	타시도 교육청 인권담당자	학생인권교육센터
6월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식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0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8월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2차 워크숍	학생참여위원 5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10월 1일	제3기 학생참여위원회 출범식	학생참여위원 5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10월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0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11월	2015 고등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6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12월	인권교육 자료 보급	연구회 소속 교사 3팀	학생인권교육센터
12월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발표회	지도교사 30팀	학생인권교육센터
12월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	인권교육 강사단 40명	학생인권교육센터
12월	2015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조사	유·초·중·고·특수 학교	학생인권교육센터

2014 학생인권 관련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역	문제점	개선 방안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교육은 실시되었으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 •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혼동하여 인식하고 있음 • 학생 인권교육이 교권을 위협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 학생 인권교육 시, 전교생이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식 인권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다수 있었고, 교육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역들의 교육들이 많아, 교육과정 편성으로 어려움을 호소 • 체험 중심의 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학교자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부담 • 무주와 고창지역 등 원거리지역은 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학급 단위의 인권교육을 권장하고, 학급별 학생활동 중심의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며,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교직원 직무 연수 마련 • 인권동아리 구성, 인권영화 감상, 관련 인사 초청,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의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체험중심의 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센터 홈페이지에 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탑재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학생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확보 및 학생들의 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 학생자치회에 대한 학교 측의 지나친 관여로 학생중심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음 • 학생회에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가 미비함 •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들의 공간인 ‘학생회실’ 설치 학교가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인권교육 시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강화 •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초·중등 10시간, 고등 17시간) 권장 및 학생관련 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권 부여 권장 • 단위 학교별 학생회실 설치를 권장 • 도교육청 지원 2015학년도 학생회실 설치 선정학교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회실이 학생자치활동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수 •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민주적인 논의를 거친 인권존중의 생활협약 제정 안내
학교생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미비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맞는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학교생활규정에 이성교제, 휴대폰, 복장·용모, 일기장, 학생회장 선출, 학생징계, 체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기구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 되도록 지도·권고

	<p>다양한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학교생활규정의 모범 사례 제시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에 담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요소들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계획 수립 • 학생인권조례의 순조로운 현장 안착화 및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선학교의 생활규정 전면적 분석 •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현장에 제시
학생인권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상담조사의 건수 중 50%가 교사의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것임 • 학생들 스스로가 체벌이 내재화된 경우가 많음(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낮음) • 학교단위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는 학부모의 이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연수원,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된 익명 결정문 사례 참고 안내 • 담당자 연수 시 조사 진행 과정 안내 •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실 활용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담당자 안내

업무 담당자				담당 업무
구분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센터장	인권옹호관	강은옥	063)239-3747	◦ 학생인권교육센터 업무 총괄
정책 교육팀	장학사	이창수	063)239-3748	◦ 인권교육 관련 정책 개발 ◦ 인권교육 업무 ◦ 학생자치활동 업무 ◦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교사	손춘임	063)239-3751	◦ 학교생활규정관련 업무 ◦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운영 ◦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운영 ◦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 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학생인권 홍보 ◦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지원
조사 구제팀	조사팀장	고형석	063)239-3749	◦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 관련 시정 및 조치 요구 ◦ 인권실태조사, 인권모니터링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위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조사관	김종기	063)239-3752	
	조사관	이충민	063)239-3753	
행정 지원팀	주무관	한경훈	063)239-3754	◦ 인권교육 관련 예산·결산 업무 ◦ 학생인권교육센터 행정 업무 지원 ◦ 학생인권교육센터 복무 및 인사 ◦ 학생인권교육센터 시설관리 업무

2015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방향

비전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사명1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학생인권 보장)

사명2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 (인권교육)

사명3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자치)

사명4 :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인권실현의 본보기가 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실천과제 1

학생인권 보장

인권실천계획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토론회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 단체 연계 사업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실천과제 2

인권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단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 개발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실천과제 3

학생자치

학생회실 설치 지원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캠프
인권존중의 생활협약 제정운동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주관 행사의 예산 편성 및 운영권 보장
학생참여위원회
인권교육 및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실천과제 4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인권옹호관제 운영
센터 관련 규정 정비
인권우호적인 공간 조성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
센터 홈페이지 운영

I 사명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의 삶을 이해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II 목적

-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및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통한 학생인권 보장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연대 및 소통의 장 마련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권리 구제
- 학생인권침해 사안 해결을 통하여 학생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

III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IV 사업 내용

1. 인권실천계획 수립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나. 내용

- 학생인권 실현 및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학생인권 관련 업무 평가회를 통한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 수렴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다. 일정 : 2015년 12월

2.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나. 구성 : 15명

- 당연직 : 2명(교육국장, 인권옹호관)
- 교육감 위촉 13명(학생참여위원 3명 포함)

다. 임기 : 2014. 3. ~ 2016. 2. (2년)

라. 심의 :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등

마. 예산 : 12,640천원

3.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가. 일정 : 2015년 4월(1차, 도교육청 2층 대강당), 10월(2차, 학생인권교육센터)

나. 참석예정인원 : 150명 내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센터직원, 인권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 내용

- 1차 : 차별 없는 교육
- 2차 :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방안

라. 예산 : 5,188천원

4. 학생인권실태조사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3조(인권실태조사)

나. 일정 : 2015년 4월 ~ 11월

다. 내용

- 실태조사 연구기관 선정 : 2015년 4월
- 도내 초·중·고등학교 표집
- 학생인권의식 실태조사
- 실태조사 발표 : 2015년 11월

라. 예산 : 20,600천원

5. 인권단체 연계사업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7조(시민활동 지원)

나. 일정

- 2015년 6월 : 17개 시도교육청 인권담당 전문직, 교육부 관계자, 타시도 인권교육센터 담당자가 참석하는 학생인권 관련 워크숍 개최
- 하반기 : 지역인권단체 등 추후 협의

다. 예산 : 1,740천원

6.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8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제49조(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제50조(조사)

나. 상담 : 대면상담, 전화·전자우편·우편·모사전송(팩시밀리)·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 및 방문 상담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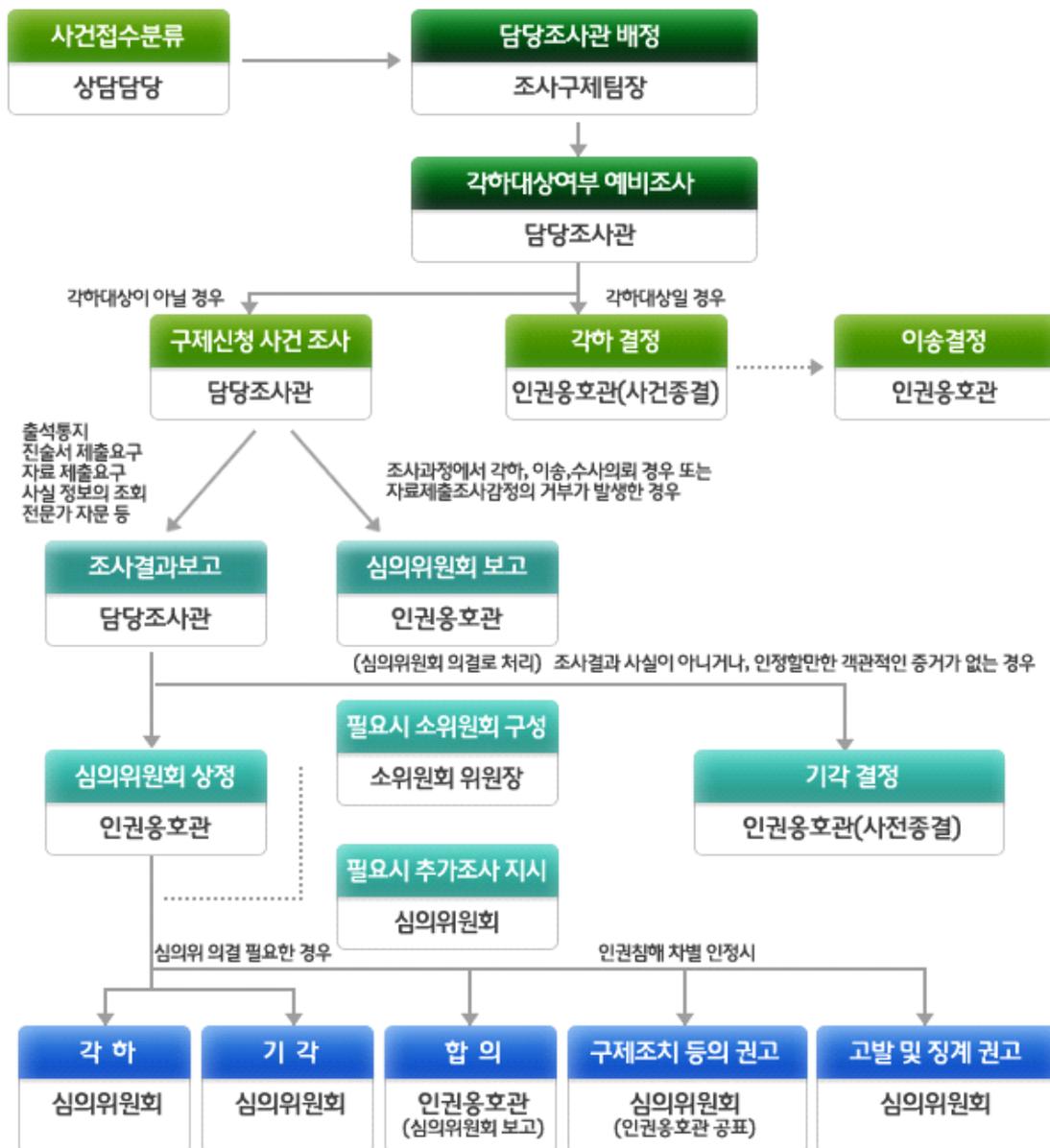
다. 구제신청에 대한 처리

- 피신청인(해당기관 관계자 포함)에게 자료요구, 질의, 현장방문조사 등 실시
-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각하, 기각, 인용(시정권고) 등 종결처리

라. 예산 : 12,040천원

마. 구제신청 사건 처리 절차

구제신청 사건 접수 처리 흐름도



I 사명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

II 목적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실현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
- 인권체험활동 및 자료개발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 지역사회 및 인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III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IV 사업내용

1. 학교 인권교육 실시

-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와 지원),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 나. 조례에 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상시화
 - 학생 학기당 2시간(노동권 내용 포함)
 - 교직원 연수, 학부모 간담회 연 2회 이상
- 다. 학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강사풀 제공 : 40명
 - 영역 : 학생인권일반, 노동인권 등
 - 강사단 워크숍 : 2015년 3월 24일 실시(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
 - 영역별 모임 활성화 : 초등, 중등 학생인권일반, 노동인권분야 등(분기별 협의)

-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 : 2015년 12월 말
- 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 구성 : 담당 장학사, 미래인재과 장학사, 교사,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단체 등
 - 활동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 노동인권교육 교재 개발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안 마련
- 마. 인권교육 운영 방안

- 전교생 및 학년전체 인권교육 지양
- 학급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의 인권교육 권장
- 노동인권 교육 1시간 이상 권장(중3, 고등학생)
- 센터 홈페이지 인권교육 자료 지속적인 탑재 및 활용
- 지역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연수원 인권교육 실시

2.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가. 모집 (총 30팀)

학교급	내용	동아리 수
초등학교	학생인권, 학생자치 등	10
중학교	학생인권, 학생자치 등	10
고등학교	학생인권, 학생자치, 노동인권 등	10
총계		30

※ 학교급에 따라 미달일 경우, 지원 동아리수가 달라질 수 있음.

나. 모집기한 : 2015년 3월 4일 (수) ~ 3월 16일 (월)

다. 일정

- 워크숍 : 2015년 3월 31일(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
- 결과보고회 : 2015년 12월 중(학생인권교육센터)
- 정산서 제출 기한 : 2015년 12월 31일 까지

라. 활동내용

- 교사와 학생의 인권 감수성 및 종합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인권, 평화, 자치활동 등 학생중심의 인권체험활동

마. 예산 : 45,000천원(팀당 150만원)

3. 인권교육 연구동아리

가. 모집 팀 : 3팀(초등, 중등, 고등)

나. 모집기한 : 2015년 3월 4일 (수) ~ 3월 16일 (월)

다. 공모 주제

- 초·중·고 인권교육 자료 개발

라. 일정

- 워크숍 : 2015년 4월 7일, 결과보고회 : 2015년 12월
-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 매달 1회
- 정산서 제출 기한 : 2015년 12월 31일 까지

마. 연구 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성 연구,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인권교육 강사단 참여를 통한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
- 연구동아리 자체 인권관련 독서토론 운영
- 실제 인권 수업 적용 후 논의 및 보완을 통한 자료 제작
-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연구 자료 탑재

바. 예산 : 5,000천원(팀당 150만원, 운영비 50만원)

4. 인권교육 자료 개발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9조(홍보)

나. 인권교육 연구회 중심으로 자료 개발

다. 영역 :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노동인권 등 4종

라. 완료 : 노동인권(6월), 초·중·고 자료(12월)

마. 삽화 및 동영상

- 2014년도 제작 기존 삽화(70편) 및 학생인권 홍보 동영상 안내(센터 홈페이지)
- 인권교육 자료 개발용 삽화 제작

바.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인권교육 강의 영상 촬영 : 노동인권(9월), 학생인권(10월)

사. 예산 : 14,400천원(자료 제작) 5,880천원(삽화 제작)

5.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운영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나. 일시 : 2015년 4월 2일 (목)

다. 공문 안내

- 학생회 중심의 학생인권의 날 행사 예시 안내(3월 2주)
- ※ 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교 회장단의 의견 반영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 공모기간 : 2015년 3월 16일(월) ~ 4월 7일(화)
- 참가대상 : 초중고 학생, 교직원

영역	참가대상	영역	인원(팀)	상품
UCC	초, 중, 고 학생	초등	3	300,000원상당의 상품권
		중등	3	300,000원상당의 상품권
		고등	3	300,000원상당의 상품권
그림	초, 중, 고 학생	초등	6	100,000원상당의 상품권
		중등	6	100,000원상당의 상품권
		고등	6	100,000원상당의 상품권
사진	교직원	교직원	6	150,000원상당의 상품권
총계			33	

마. 단위학교 포스터 배부

- 대상 : 지역교육지원청, 도내 모든 학교
- 내용 : 학생인권의 날 홍보 포스터, 학생인권조례 포스터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기념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4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 도교육청 2층 대강당

사. 예산 : 8,200천원

I 사명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한다.

II 목적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자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이를 실현
- 학생 스스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마련

III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학생자치 활성화)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41조

IV 사업내용

1. 학생회실 설치 지원

- 가.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
- 나. 공모 : 2015년 4월 6일 ~ 4월 14일
- 다. 대상학교 : 중·고등학교 40교 선정(2014년까지 총 80개교 지원)
- 라. 학생회실 설치 학교 워크숍 : 4월 28일(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
- 마. 설치 대상학교 컨설팅

- 일시 : 2015년 11월 ~ 12월 중
 - 내용 : 학생회실, 학생자치활동
- 바. 예산 : 200,000천원(학교별 500만원 지원)

2.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캠프

가. 대상

- 초·중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주관(2015년 4월 ~ 11월)
- 고등학교 : 학생회 임원 대상, 도교육청 주관(2015년 11월)

나. 예산 : 74,000천원 (도교육청 6,000천원, 지역 68,000천원)

3. 인권존중 생활협약 제정 운동 전개

가.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

나.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만들고 지키는 생활협약 제정 운동 전개

- 안내 : 인권담당자 연수, 교직원 인권교육 등
- 운영학교는 학교홈페이지에 내용 게시
- 생활협약 홍보 동영상(2014년 제작) 안내 : 센터 홈페이지(인권동영상 코너) 탑재

다. 생활협약 예시

- 장수초등학교

교사 3명	학생 3명	학부모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수업을 하겠습니다. •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 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예의바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 친구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하루 10분 이상 마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 아이의 성적보다 마음을 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남보다 잘 하라는 말보다 함께 어울려 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전주신일중학교

교사 실천 약속	학생 실천 약속	학부모 실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 학생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 선생님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 학교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말로 인사하기, 안아주기 등 자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대화하겠습니다. •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하겠습니다.

4.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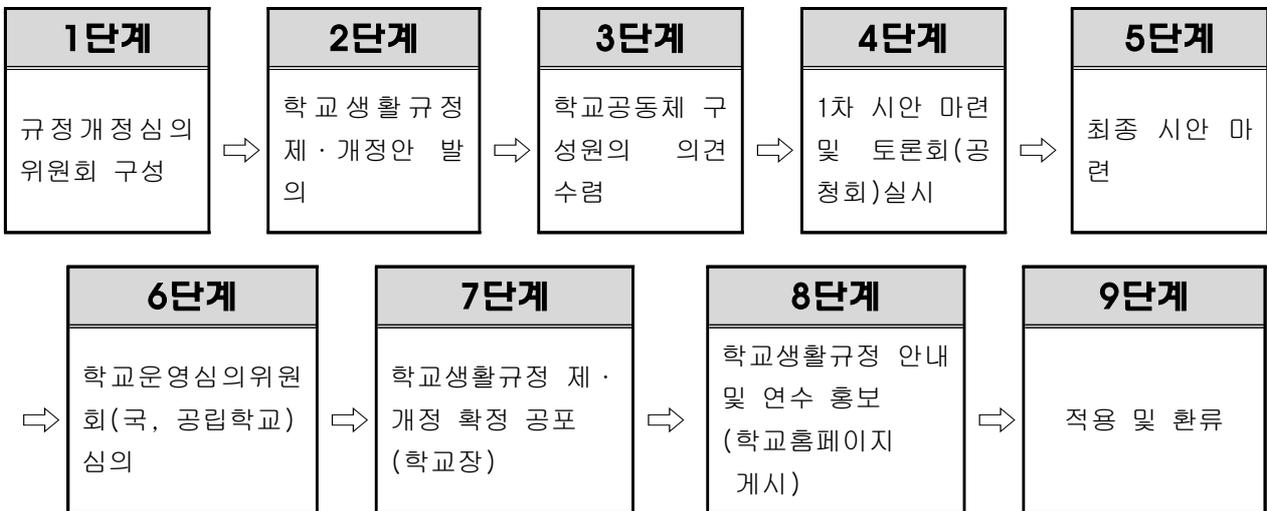
나. 개정 방향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다. 실태 조사

- 각급 학교생활규정 실태 전수 조사 실시(4월 중)
- 인권침해요소 분석 후 결과 학교 안내

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민주시민) 참조

5.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및 운영권 보장

가.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의견 수렴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0조

나. 학교축제, 어린이날, 학생의 날, 스승의 날, 학생인권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학생회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

다. 학생자치활동 시간 및 예산 확보

- 초·중등 10시간, 고등 17시간 권장
- 표준기본운영비 1%이상 편성 권장

라.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마. 안내 : 공문, 연수, 워크숍, 컨설팅

6. 인권교육 및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가. 영역 : 인권교육, 학생자치활동,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

나. 내용

영역	내용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 여부, 규정개정의 절차 등
학교인권교육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시간, 인권교육 방법 등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회 예산 편성권 부여 등

다. 예산 : 3,500천원

7.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나. 구성 : 지역교육지원청 별 공개모집 40명, 소수자 의견 반영을 위하여 별도 절차를 거쳐 선발된 10명(총 50명)

- 지역별 위원

지역청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주	1	4	4	9
군산	1	1	3	5
익산	1	1	3	5
정읍	1	1	2	4
남원	1	1	1	3
김제	0	1	1	2
완주	1	1	1	3
진안	0	0	1	1
무주	0	0	1	1
장수	0	0	1	1
임실	0	0	1	1
순창	0	0	1	1
고창	0	1	1	2
부안	0	1	1	2
계(A)	5	7	17	40

다. 임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1년)

라. 역할

- 의견 제출(조례 개정,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를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의견제출

마. 운영

- 정기회의 2회(1월, 7월) 및 임시회의 3회, 해단식 9월, 출범식 10월,
- 임원 : 대표 1인, 부대표 3인(초중고 각 1인), 지역대표 4인
- 소통을 위한 밴드 운영

바. 예산 : 28,880천원

실천과제 4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I 사명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인권실현의 본보기가 된다.

II 목적

-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의 독립성 확보
- 센터 직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함양을 통한 학생인권 실현
-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III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학생인권 보호)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IV 사업 내용

1. 인권옹호관계 운영

가. 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사항(학생인권 보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제43조(인권옹호관), 제44조(겸직금지),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제50조(조사)

나. 임기 : 2년

다. 직무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학생인권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조례 제4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학생인권교육

2.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직

가.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제46조(사무국)

나. 조직

- 인권옹호관(1명), 정책교육팀(2명), 조사구제팀(3명), 행정지원팀(1명)

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실천과제 마련

라. 센터 내 인권교육

- 파견교사 확보(2015년 9월) : 초등 1, 중등 1
- 인권교육 시간 : 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 센터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안

마. 민주적인 회의 운영

- 전체 직원회의 (주 1회, 월요일 오전), 팀별 회의(주 1회, 수요일 오전)

바. 워크숍 운영

- 센터 직원 직무교육(자율성 및 전문성 함양, 상담 역량 강화)
- 분기별 직원 워크숍(사업 평가 및 논의)

3. 학생인권교육센터 관련 규정 정비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에 대한 규정 신설

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옹호관 위임전결 사항 등

다.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정비

4. 인권우호적인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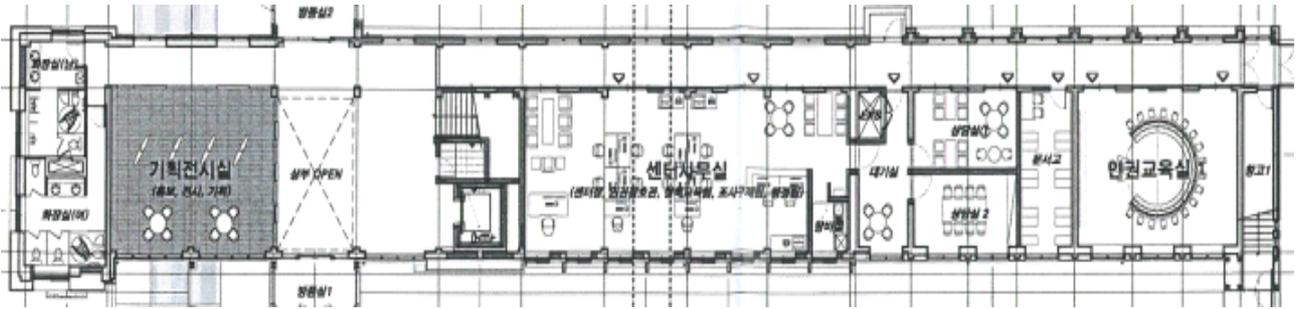
가. 장소 : 혁신도시 내 (구) 전주만성초, (6월 초 이전 예정)

나. 향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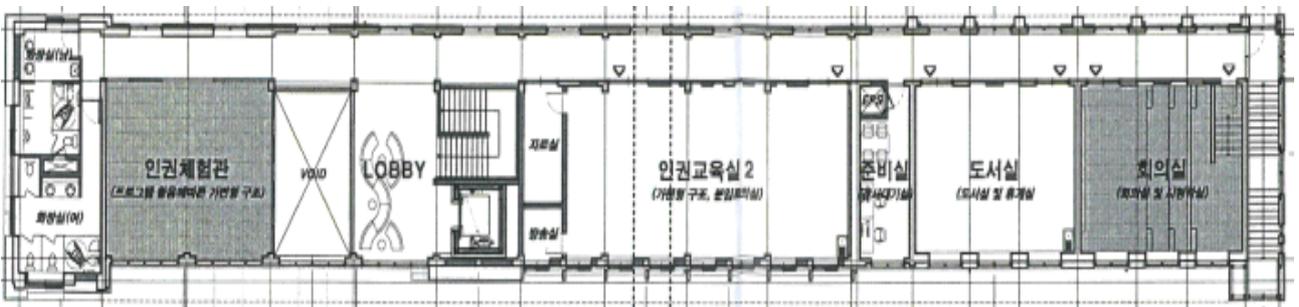
구분	건명	일정
공사	학생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건축, 통신, 기계, 소방 등)	2015.2.28까지
	학생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착공 (공사기간 90일)	2015.2.25.(수)
	학생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준공예정	2015.6월초
집기, 물품 구입	각 실별 집기 및 비품 구입	2015.3월 ~
각종용역계약	무인경비용역,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점검, 청소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	2015.5월말까지

나. 학생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 1층 : 기획전시실, 센터사무실, 상담실1, 상담실2, 문서고, 인권교육실1, 창고



- 2층 : 인권체험관, 인권교육실2, 준비실, 도서실, 시청각실, 로비



다. 예산 : 1,603,978천원(리모델링비)

5.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

가. 홍보물 제작

- 팜플렛 : 센터 비전 및 업무 소개
- 기념품 : 센터 방문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증정

나.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 동영상 활용

- 연수 및 워크숍

다. 예산 : 15,000천원

6.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

가. 주소 : <http://human.jbe.go.kr>

나. 홈페이지 구성

- 메뉴화면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인권상담	민주시민	인권자료	참여인권	정보공개
소개	학생인권교육	상담안내	학교생활규정	인권자료일반	인권발언대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람들	교직원인권교육	상담신청	학생자치활동	초등인권	인권교육정책제안	행정정보공표
하는 일	학부모인권교육	상담Q & A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중등인권	학생참여위원회	정보목록
공지사항		상담자료실	민주시민교육	학생인권의 날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열린정부바로가기
센터소식		결정례	인문학강좌	인권동영상		시설이용
활동사진						
이달의 행사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오시는 길						

- 메인 화면



라. 운영

- 센터 소개, 인권교육 및 학생자치 자료 탑재, 학생인권 상담 및 익명결정문 공개, 학생참여위원회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등